

공민권?
그것이 궁금하다

알기쉬운 의회용어 사전

공민권



충청남도의회
CHUNGCHONGNAM-DO COUNCIL



이번주 주제 Q

공민권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
정치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 국민을 공민이라고 하며,
공민이 가진 선거권 기타의 권리를
공민권 또는 참정권이라고 합니다.



충청남도의회
CHUNGCHONGNAM-DO COUNCIL



공민권의 넓은 뜻은 무엇인가요?

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이
법률상 평등이 보장되어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
이러한 공민권은 넓은 뜻으로
시민권과 같이 해석되고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.



충청남도의회
CHUNGCHONGNAM-DO COUNCIL

시민권과 공민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그러나 **시민권**이 국가에 대한 저항 내지
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**시민적 자유권**으로서
소극적 측면을 가지는 데 비하여,
공민권은 국가에 대한 자유라고 하는 **정치적 권리**,
즉 **참정권**이라는 **적극적인 면**을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.



충청남도의회
CHUNGCHEONGNAM-DO COUNCIL



공민권을 어떤 경우에 제한하나요?

우리나라의 경우도 **일정한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자,**
외국인, 금치산자·한정치산자 등에 대해
이러한 공민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



공민권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셨나요?

다음에 더 재밌는 의회용어로 만나요!

더 쉽게, 더 가까이
도민 여러분께 다가가는
충청남도의회가
되겠습니다.



충청남도의회

CHUNGCHONGNAM-DO COUNCIL